직제규정

제정 1996. 11. 01. 제74차 개정 2022. 02.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학원 정관 및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본교의 기본 행정 조직을 정하고 체계 있는 교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2장 총장, 부총장, 총장 직속 기구

[장 명칭 변경 2020.01.22]

제3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하다.

제4조(부총장) ①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1.11.22.)

- 1. 교무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22.02.18)
- 2. 예산, 감사,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개정 2020.05.13., 2022.02.18)
- 3. 교직원 인사, 취업, 학생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 (개정 2022.02.18)
- 4. 대외협력, 국제교류, 재정확충 사업 등에 관한 업무 (개정 2022.02.18)
- 5. 한방병원·실습목장·평생교육원·사회협력단·HRD직업능률혁신원·산학협력단에 관한 업무 (개정 2022.02.18)
- ② 총장의 유고 시에는 <mark>부총장이</mark>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2.18) [전부개정 2019.02.27., 2020.01.22., 2020.03.18]

제5조(비서실) 총장에 관한 비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비서실을 두며, 실장 은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전부개정 2019.02.27.]

제5조의2(감사팀) [본조신설 2020.01.22.] (삭제 2020.05.13)

제3장 보직 및 임기

- **제6조(보직 및 임기)** ① 행정부서, 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부총장의 임면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43조 제3항에 따른다.
 - ② 행정부서의 원장, 실장, 센터장, 단장, 부장, 대학의 학과장, 학부장, 대학원의 부원장 및 주임교수는 총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③ 부속기관 및 지원기관, 부설기관·연구소(원)·위원회의 장은 총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부속기관 중 한방병원의 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

- 이 임면한다. (개정 2019.07.26.)
- ④ 사무직 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전부개정 2019.02.27]

제4장 대학, 학부(과) 및 대학원

[장 명칭 변경 2020.01.22]

- **제7조(단과대학)** ①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유관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 등을 겸직할 수 있다.
 - ② 각 단과대학에 교학지원팀을 두되, 2개 이상의 단과대학 운영을 지원하는 통합 교학지원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 ③ 단과대학장은 단과대학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 ④ 한의과대학에는 한의학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해 한의학교육실을 둔다. 단, 한의학교육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6. 23.)

[전부개정 2019.02.27.]

- 제8조(학부 및 학과) ① 각 대학 및 대학원에는 학칙에 규정된 학부 및 학과를 둔다.
 - ② 각 학부 및 학과에는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두며, 유관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 등을 겸직할 수 있다.
 - ③ 대학원에는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를 둔다.
 - ④ 교양대학에는 비모집단위로서의 교양학부를 둔다.

[전부개정 2019.02.27.. 2020.01.22] [조명 변경 2020.01.22]

- **제9조(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①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하고, 유관 대학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 ②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대학원지원팀을 두며,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임명하고, 팀장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전부개정 2019.02.27]

제5장 행정조직

- **제10조(대학본부)** ① 총장이 통할하는 대학본부에 교육연구처, 기획평가처, 학생행복처, 대외협력처, 입학홍보처, 행정지원처, 인재개발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 실, 센터, 단, 부,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1.)
 - ② 전항의 행정부서 각 처·원에는 처·원장을 두고, 각 처·원에 관한 임명사항은 제11조에서 제16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1.11.21.)
 - ③ 제1항의 원장, 실장, 센터장, 단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임명하고, 팀장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전부개정 2019.02.27]

- 제11조(교육연구처) ① 교육연구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 ② 교육연구처는 학교의 교무 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처에 교무·연구팀, 학사지원팀, 미래교육혁신원을 두고, 미래교육혁신원에는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20.07.30)

[조명 변경 2019.02.27] [전부개정 2019.02.27]

- 제12조(기획평가처) ① 기획평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 ② 기획평가처는 학교의 장단기 발전을 위한 기획업무, 예산편성, 평가, 통계 및 성과관리, 감사 및 법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05.13)
 -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평가처에 기획예산팀, 평가실, 감사팀을 두고, 평가실에는 평가성과관리팀을 둔다. (개정 2020.05.13)

[조명 변경 2019.02.27] [전부개정 2019.02.27]

- 제13조(학생행복처) ① 학생행복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 ② 학생행복처는 학생지도, 학생서비스, 사회봉사,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 학생 학습역량 강화, 취업 및 진로 지원, 체육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07.30)
 -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행복처에 학생행복팀, 상지대학교사회봉사단(이하 '사회봉사단'이라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행복상담센터, 체육부를 둔다. (개정 2020.07.30., 2021.11.22.)
 - ④ 사회봉사단,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행복상담센터, 체육부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7.30., 2021.11.22.)

[조명 변경 2019.02.27] [전부개정 2019.02.27]

- 제14조(대외협력처) ① 대외협력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 ② 대외협력처는 대외협력, 발전기금 및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 발전기금팀, 국제어학원을 두고, 국제어학원에는 국제교류팀을 둔다. (개정 2019.06.05.)
 - ④ 국제어학원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9.02.27]

- 제15조(입학홍보처) ① 입학홍보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 ② 입학홍보처는 입학, 대내·외적인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학홍보처에 입학팀, 홍보팀을 둔다.

[전부개정 2019.02.27]

- 제16조(행정지원처) ① 행정지원처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임명한다.
 - ② 행정지원처는 학교의 총무, 회계, 구매관재, 학교시설 및 영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③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처에 총무팀, 회계팀, 시설팀을 둔다.

[조명 변경 2019.02.27] [전부개정 2019.02.27.]

- 제16조의2(인재개발원) ① 인재개발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 ② 인재개발원은 취업진로, 현장실습 운영, 창업, 국가시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에 취업진로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지원단. 고시원을 둔다.
 - ④ 취업진로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지원단, 고시원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11.22.]

제6장 부속기관 및 지원기관

제17조(부속기관) 부속기관으로 한방병원, 학술정보원, 생활관, 실습목장, 실습농장, 상지대학교 미디어센터(이하 '상지미디어센터'라 한다), 중앙기기센터, 보건소, 인권센터를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다만, 한방병원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술정보원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보건소의

장은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교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07.30., 2021.11.22.)

①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편제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학술정보원
- 1. 학술정보원은 도서 및 연구자료의 수집·관리, 학술정보의 열람 및 대출, 전산기기를 이용 한 학내 구성원의 교육 및 실습, 학사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업무, 교내 정보화 사업업무를 관장한다.
- 2. 전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정보원에 학술지원팀, 전산정보팀 두며, 각 팀장은 6 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 3. 학술정보원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생활관
- 1.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면학에 정진하게 하며 단체생활을 통한 협동정신 함양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 2. 생활관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④ 실습목장
- 1. 동물자원계열학과의 실습교육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2. 실습목장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⑤ 실습농장
- 1. 식물·동물에 대한 실습 및 연구실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2. 실습농장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⑥ 상지미디어센터
- 1. 본교 언론기관으로 정규뉴스, 라디오, 웹진 편집, 제작 등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2. 상지미디어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20.07.30]

- ⑦ 중앙기기센터
- 1. 대학 내 실험실습기자재의 효율적인 구매를 위한 심의와 공동기자재 관리 및 공동기자재 를 이용한 자연과학 관련 교육의 제반 업무를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여 교육수 준의 향상 및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 2. 대학 내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및 소속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를 관 장하다.
- 3. 중앙기기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⑧ 삭제 (2021.11.22.)
- ⑧ 보건소 (개정 2021.11.22.)
- 1.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및 진료 업무를 관장한다.
- 2. 보건소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① 삭제 (2021.11.22.)
- ⑨ 인권센터 (개정 2021.11.22.)
- 1. 인권센터는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수립, 예방과 교육, 홍보, 연구 및 상담, 사건처리, 관련 위원회 총괄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2. 인권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9.02.27]

제18조(지원기관) ① 지원기관으로 예비군연대 및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② 예비군연대 및 학생군사교육단의 세부조직 및 우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9.02.27]

제7장 부설기관·연구소(원)·위원회·산학협력단

- **제19조(평생교육원)** ① 본교는 평생교육원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양과 직업적 자질향상 및 사회적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교 부설 평생교육원을 둔다.
 - ② 평생교육원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9.02.27]
- **제20조(교육연수원)** ① 본교는 교육연수원 운영을 통하여 교원 및 교육공무원들에게 기본 자질을 함양하게 하고, 자기직책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 및 교육기술을 연마하여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원 부설 교육연수원을 둔다.
 - ② 교육연수원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9.02.27]
- **제21조(공학교육센터)** ① 본교는 공학교육인증 및 공학교육혁신 방향 설정을 위하여 부설 공학교육센터를 둔다.
 - ② 공학교육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9.02.27.]
- 제21조의2(사회협력단) ① 본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협력단을 두고, 사회협력단장은 총장이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02.18)
 - ② 사회협력단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상지대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우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원주시노 인종합복지관 등을 둔다. (개정 2020.05.13., 2020.06.26)
 - ③ 사회협력단에 운영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 또는 계약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9.11.06)
 - ④ 제2항 각 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06) [조 신설 2019.07.26.] [조명변경 2019.10.15.] [전부개정 2019.10.15.]
- 제21조의3(HRD직업능률혁신원) ① 본교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HRD직업능률혁신원(이하 "직업능률혁신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직업능률혁신원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1.22.]
- **제21조의4(요양보호사교육원)** ① 본교는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을 둔다.
 - ②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3.18]
- **제22조(부설연구소)** ① 본교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인문사회연구원, 산업경영연구소, 북방농업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환경과학기술연구소, 방재연구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한의학연구소, 협동사회경제연구원, 보건과학연구소, 상담교육연구원, 예술체육문화연구소, 관광문화연구소를 둔다.

- ② 부설 연구소(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9.02.27]
- 제23조(위원회) ① 본교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9.02.27]

- **제24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② 산학협력단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9.02.27]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평가관리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리실은 제13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99학년도 대학평가 종료시까지 유지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2001년 6월 5일 학칙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288, 2004.4.14)

이 규정은 200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397, 2005.4.19)

이 규정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07, 2005.6.28)

이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938, 2005.9.6)

이 규정은 2005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84, 2005.10.18)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365, 2005.12.12)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412, 2005.12.26)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63, 2006.11.13)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29, 2007.5.14)

이 규정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279, 2007.11.27)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814, 2008.7.16)

이 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897, 2008.8.14)

이 규정은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43, 2008.9.30)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288, 2008.11.19)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72, 2009.2.18)

이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455, 2009.4.9)

이 규정은 200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64, 2009.6.22)

이 규정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88, 2009.2.10)

이 규정은 201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56, 2010.4.23)

이 규정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01, 2010.6.8)

이 규정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90, 2010.7.27)

이 규정은 201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14, 2011.6.2)

이 규정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272, 2011.11.7)

이 규정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8, 2012.1.16)

이 규정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52, 2012.3.14)

이 규정은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44, 2014.4.3)

이 규정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27, 2014.07.30)

이 규정은 2014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95, 2014.10.22)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73, 2014.11.10)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45, 2015.01.15)

이 규정은 2015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90, 2015.01.29)

이 규정은 2015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50, 2015.02.24)

이 규정은 2015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56, 2015.06.0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② (부총장에 관한 경과조치) 신 직제규정에 따른 부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부총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86, 2015.06.19)

이 규정은 2015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0, 2016.01.11)

이 규정은 2016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09, 2016.02.15)

이 규정은 2016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25, 2016.08.10)

이 규정은 2016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86, 2016.09.05)

이 규정은 2016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67, 2017.04.20)

-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거 시행된 행정조직의 장에 대한 임면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예산부-373, 2017.09.20)

이 규정은 2017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00, 2017.12.05)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61, 2017.12.29)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26, 2018.04.26)

이 규정은 2018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63, 2018.07.12)

이 규정은 2018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54, 2018.08.30)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농업과학교육원규정 및 숲해설가 양성교육원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19, 2019.02.2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보직교원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96, 2019.06.0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84, 2019.07.26)

이 규정은 2019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17, 2019.10.15)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51, 2019.11.06)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4, 2020.01.22)

이 규정은 2020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79, 2020.03.18)

이 규정은 2020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5, 2020.05.13)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27, 2020.06.26)

이 규정은 2020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83, 2020.07.30)

이 규정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61, 2021, 6, 23.)

이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613, 2021, 11, 2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09, 2022, 0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년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대학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② 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5항 중 "교육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 ③ 상지대학교 사회협력단 운영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회협력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 ④ 교육혁신특별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교육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⑥ 발전기금추진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사회협력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⑦ 부속한방병원 발전추진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중 "사회협력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⑧ 사회협력 추진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회협력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